

제1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다 음

1. 시행 일정

공고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 (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제1차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자 발표
3.27(금)	4.20(월) ~ 4.28(화)	7.11(토)	7.24(금)	7.24(금) ~ 8.5(수)	8.18(화)	8.18(화) ~ 8.26(수)	10.24(토)	12.11(금)

<유의사항>

-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오전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min24.energy.or.kr/nbea>)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오전 10:00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위기 경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원서 접수

- 원서접수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min24.energy.or.kr/nbea>)
- 접수 시 준비서류 : 증명사진 스캔 1매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용량 500KB 이하 JPG 파일

구분	내용
접수 가능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배경
접수 불가능 사진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 착용, 혼란한 배경 사진, 기타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 검정수수료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68,000원	89,000원

- 접수 시 유의사항

- 면제 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 원서 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 취소가 불가능 함
- 원서 접수는 해당 접수 기간 첫날 오전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min24.energy.or.kr/nbea>)을 통하여 가능
- 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 당일 신분증과 상이한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함

3. 시험 장소

- 제1차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 제2차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 * 구체적 시험 장소는 제1·2차 시험 접수 시 안내
 - * 접수 인원 증가 시 서울지역 예비시험장 마련

4. 응시 자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응시 자격은 [붙임1] 참조
- 응시 자격 관련 문의는 접수처(052-920-0419)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min24.energy.or.kr/nbea>)의 Q&A 메뉴 이용

5. 검정 방법 및 면제 사항

- 검정 방법

구 분	시험과목	문항 수	검정방법	시험 시간(분)	입실 시간
제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20	사지선다 선택형	120	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20			
제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10 내외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150	

- * 시험시간은 면제 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함
-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면제 과목

구 분		면제 과목 (제1차 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면제 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 가능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면제 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 자격 증빙자료 제출 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 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 면제 가능함
- * 면제 과목은 원서 접수 이후 변경 불가함

- 제11회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12회 제1차 시험이 면제됨

6. 합격 결정 기준

- 제1차 시험 :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제 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제 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 점수 산정
- 제2차 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7. 응시 자격 제출 서류

- 대상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 접수 기간 : 7.24.(금) ~ 8.5.(수)(13일간)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4대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시 공지
- 유의사항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 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 자격, 면제 과목 및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시행일("26.7.11)

8.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 접수 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반환 및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 반환

반환 기준	반환율: 100%	반환율: 50%	반환 불가
제1차 시험	4월20일 10시00분00초부터 4월28일 23시59분59초까지	4월29일 00시00분00초부터 7월6일 23시59분59초까지	7월7일 00시00분00초부터
제2차 시험	8월18일 10시00분00초부터 8월26일 23시59분59초까지	8월27일 00시00분00초부터 10월19일 23시59분59초까지	10월20일 00시00분00초부터

- * 인터넷 원서 접수 누리집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 기간 외 환불 관련 규정은 [붙임4] 수수료 환불 관련 안내 사항 참조

9.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공 사항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등은 원서 접수 시 장애 여부 표기 및 편의 요구사항을 기입(편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미기입)
 - 원서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1차: 4.29~5.12/2차: 8.27~9.9)에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처(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담당자 앞)
- 유형별 편의 제공 가능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는 [붙임3] 참조

10. 시험 시행 당일 유의 사항

- 입실 시간(09시 30분) 미준수 시 시험응시 불가
-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 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수 있음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 계산기 등
- 아래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규정 신분증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 만료 전 운전면허증과 여권, 공무원증(장교·부서관 신분증 및 군무원증 포함), 신분 확인 증명서(군인용),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 확인서비스	①모바일 신분증 - 대상 앱 : (정부) 모바일신분증앱 / (민간) 삼성월렛,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NH올원뱅크, KB스타뱅킹 - 대상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②모바일 신분확인서비스 : 정부24

- * 본인이 직접 인정 가능한 모바일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하며,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인정 불가
- * 인정 가능한 모바일 앱이 작동하지 않아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고, 다른 규정 신분증도 없을 경우 시험응시 불가

- 수험표와 규정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1차 시험의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 제1차 시험의 답안지의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 * 수정테이프 외에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테이프 사용에 의한 답안 전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교체 답안지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함
- 제2차 시험 답안 작성은 검은색(black), 파란색(blue)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및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될 수 있음
 -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제2차 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음
-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최대 2대까지 허용하며 (예비용 1대 포함),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퇴실 조치함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 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3년 이내에서 검정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 무효처리 함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 시험 도중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 합격자는 발표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min24.energy.or.kr/nbea>)에서 확인 가능

11. 결격사유

- 자격발급일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음

제31조 제2항 각호(결격사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문의처

- 기타 문의 사항은 접수처(052-920-0419)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min24.energy.or.kr/nbea>)의 Q&A 메뉴 이용

붙임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 자격 기준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 범위
3.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공 사항 및 증빙서류
4. 수수료 환불 관련 안내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 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 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제1차 시험**

시험과목	주요항목	출제 범위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효율 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3. 에너지법	1. 에너지법령
	4. 건축법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설비, 보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예 :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1. 건축환경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2. 열환경계획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3. 공기환경계획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4. 빛환경계획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1. 열역학 2. 유체역학 3. 열전달 기초 4. 건축설비 기초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1. 열원설비 2. 냉난방·공조설비 3. 반송설비 4. 급탕설비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자동제어 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등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기준, 용어정의)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3.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4.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5.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6. 냉난방 용량 계산 7. 에너지데이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업무 운영규정 등)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제2차 시험

시험과목	주요항목	출제범위
<p>건물 에너지효율설계 · 평가</p>	<p>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단열, 온도, 습도, 결로방지, 기밀, 일사조절 등 열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열전달, 유체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 에너지데이터 및 BEMS의 개념, 설치확인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p>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 평가</p>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내용	비고	증빙서류	
시각장애	중증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연장 1.7배 •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 답안지 대필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장애인 등록 증명서	
	경증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의사소견서 제출) 	확대경 지참 가능		
뇌병변 장애	중증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필기 보조도구 지참 가능		
	경증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의사소견서 제출) 			
지체 장애	중증 상지(복합)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경증 상지(복합)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의사소견서 제출) 			
	하지 지체	-			
청각 장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기타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의사진단서
	기타 (임산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65세 이상의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시험실 배치 등 			

수수료 환불 관련 안내 사항

□ 다음의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합니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치료·입원 또는 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필수 첨부)
6. 북한의 포격 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 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7. **예견할 수 없는 기후 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